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718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,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차장, 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원장·이사"를 "원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 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소방청 차장
- 2.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- 3. 충청북도 행정부지사

제6조제4항 중 "이사"를 "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 7항 중 "원장·이사 및 감사"를 각각 "원장,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원) ① (생 략)	제6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원장·이사</u> 및 감사는 정관	② <u>원장</u>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	
장이 임명한다.	
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	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
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	하는 사람(이하 "당연직 이사"
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	라 한다)과 정관으로 정하는
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	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
포함되어야 한다.	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당
	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
	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
	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
	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
	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	<u>1. 소방청 차장</u>
	2.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 및
	보건복지부 소속 3급 공무원
	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
	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
	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
	<u>명</u>
	3. 충청북도 행정부지사
④ 원장 및 <u>이사</u> 의 임기는 3년	④ <u>당연직 이사 외의</u>
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	<u>이</u> 시}

수 있다.

- ⑤・⑥ (생 략)
- ⑦ <u>원장·이사 및 감사</u>가 임기 ⑦ <u>원장, 당연직 이사 외의 이</u>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사 및 감사-----<u>원장·이사 및 감사</u>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																	•

- ⑤·⑥ (현행과 같음)

----- <u>원장, 당연직 이</u> <u>사 외의 이사 및 감사</u>-----